

서 울중앙지 방법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451952 손해배상 (국)

원 고 1. 정태순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 2006동 2402호 (삼송동, 삼송2차 아
이파크)

2. 정숙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74-22, 103동 1104호 (지곡동, 자봉마을
써니밸리)

3. 정해교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3길 9, 1504동 2 () 1호 (율하동, 율하휴먼시
아15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수행자 박민제, 김도현

변론 종결 2025. 9. 25.

판결선 고 2025.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정태순에게 102,826,666원, 원고 정숙, 정해교에게 각 22,18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9. 25.부터 2025.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태순에게 129,166,666원, 원고 정숙, 정해교에게 각 27,91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부친인 망 정연진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1950. 1. 경 좌익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북지역에서 뱃치산 토벌작전을 하는 경찰관 등에 의하여 자택에서 체포된 후 영주시 안정면 소재 안정역 부근 야산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실, 망인의 손자인 정준영이 2022. 1. 19. 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위와 같이 망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한 사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 7. 9. 경북 영주·봉화·청송·칠곡·의성·군위·구미 군 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진실규명결정에 망인이 위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4. 7. 23. 경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정준영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정준영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무원인 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망인을 사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망인과 그 유족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신빙성이 부족한 유족들의 전문진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진실규명결정만으로 망인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하여 피고가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북 영주·봉화·청송·칠곡·의성·군위·구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조직적으로 체포되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살해된 사건인 점, ② 그 과정에서 가족들

에 대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제적등본에 1949. 4. 23.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69. 9. 6. 망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기재된 것으로, 위 제적등본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일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의 1948년 형사사건부에 망인이 1949. 9. 27.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망인의 실제 사망일은 그 이후라고 보아야 하는데,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이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겨울에 희생되었고, 매년 음력 11. 19.에 망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음력 1949. 11. 19.은 양력 1950. 1. 7.인 점, ⑤ 이 사건 이후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망인의 가족으로서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 경위를 숨겨야 했을 가능성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을 경북 영주·봉화·청송·칠곡·의성·군위·구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한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 근거가 부족한 유족들의 전문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망인의 희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또는 망인의 희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소멸시효 기산점을 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2010.

12. 27. 경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북 군위·안동·영주·의성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2010. 6. 29.자 진실규명 결정을 과거사정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망인의 희생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공표일인 2010. 12. 27.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①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구 회계법 (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현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 (H4헌바148 등 결정)).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65768 판결 참조) .

②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 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 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 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참조)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 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 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 가 송달된 날이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65768 판결 등 참조) .

3) 구체적 판단

① 먼저, 망인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망인의 희생에 관한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

일 수 없다.

② 또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4. 7. 23.경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정준영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정준영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10.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과 그 유족들이 경북 영주•봉화•청송•칠곡•의성•군위•구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망인의 부재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유족들이 경험하였을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이 사건은 불법행위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오랜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일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일과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금의 산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분단 이후 이념대립이 격화되는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위자료는 8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의 위자료는 40,000,000원, 망인의 모친과 자녀의 위자료는 각 8,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호주였고, 망

인의 배우자인 김인대, 망인의 모친인 박주양, 망인의 자녀인 원고 정숙 (장녀, 1965. 7.

1. 혼인), 정해교 (차녀, 1972. 2. 8. 혼인), 정태순 (장남), 망인의 형제자매인 정면진 (제),

정기 (매, 1948. 4. 16. 혼인), 정선 (매, 1956. 2. 1. 혼인) 이 있었던 사실, 박주양이 1961.

9. 10. 사망한 사실, 김인대가 2014. 1. 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은 구 관습법에 따라 망인의 유일한 직계비속 남성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정태순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② 박주양의 위자료청구권은 구 민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0 () 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자녀인 망인의 대습상속인인 김인대, 원고 정숙, 정해교, 정태순, 자녀인 정면진, 정기, 정선이 각각 4/50 (= 망인의 상속분 4/10 x 배우자의 상속분 1/5), 4/50 (= 망인의 상속분 4/10 x 동일 호적에 있는 딸의 상속분 1/5), 4/50 (= 망인의 상속분 4/10 x 동일 호적에 있는 딸의 상속분 1/5), 8/50 (= 망인의 상속분 4/10 x 아들의 상속분 2/5), 4/10 (아들의 상속분 1/10 (동일 호적에 없는 딸의 상속분)), 1/10 (동일 호적에 없는 딸의 상속분) 씩 상속하였으며, ③ 김인대의 위자료청구권은 자녀인 원고 정숙, 정해교, 정태순이 각 1/3씩 상속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정태순에게 102,826,666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80,000,000원 + 박주양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1,280,000원 (= 8,000,000원 x 8/50) + 김인대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13,546,666원 {= 40,640,000원 (= 고유 위자료 40,000,000^ + 박주양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640,000원 (= 8,000,000원、人 4/50))、人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고유 위자료 8,000,000원], 원고 정숙, 정해교에게 각 22,186,666원

[= 박주양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640,000원(= 8,000,000원 x 4/50) + 김인대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13,546,666원{= 40,640,000원(= 고유 위자료 40,000,000원 + 박주양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640,000원(= 8,000,000원 x 4/50))x 1/3} + 고유 위자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9.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송 전 자서 영 완료

정본입니다.

2025.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이민정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 (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 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기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